

IV.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단행본, <잊어진 이름들> 참고)

1. 정치범의 범위 및 처벌

- 김일성은 정치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당과 정권 반대) 등 매우 애매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12권, p. 217)
- 현행 형법에 규정된 주요 정치범 해당 죄는 다음과 같음.
 - 제51조 국가주권 전복 음모죄 : 당 · 국가기관에 대하여 무장 폭동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 및 반혁명적 시위
 - 제52조 조국반역죄 : 외국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 및 적 또는 외국 기관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 제56조 반동선전선동죄 : 당과 국가의 정책을 중상·비방, 반동적인 출판물인 문서를 작성·보관·유포하는 행위
 - 제59조 반혁명적 음해죄 :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할 목적으로 국가의 산업·운수·상업 등을 파괴·저해하는 행위
 - 제62조 사회주의국가 반대 및 인민 적대죄 : 사회주의 및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반대하거나 혁명적 인민들을 적대시하는 행위
-
- o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한해 무한정으로 처벌토록 하는 16개 조항(형법 제51 - 66조)을 명문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적법한 재판 절차없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바
 - 7호 사범(정치범)은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취급 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비공개, 단심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 정치범은 본인 외에도 가족, 친척(경우에 따라)까지 연계시키는 연좌처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
- o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바, 주로
 - 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제 위반자, 북한 탈출 기도자, 북송 교포, 일부 납북인사들과

- 일명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당 정책 위반자 등 혁명화 대상자들임.
- o 특히 북한은 1973년부터 김정일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 투쟁조직인 3대혁명소조 활동과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함과 때를 같이하여 비판자 및 정적들을 숙청,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음.
- o 정치범의 체포, 처벌, 수용관리 등 모든 업무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전담하고 정치범의 호송 및 외과경비 등은 사회안전부의 경비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정치범의 색출은 주민 10명당 1명 정도로 비밀 조직된 각급 정보조사망(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당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 정치범으로 낙인되면 야밤을 틈타 이웃 주민 몰래 전 가족을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음.

수용시설 및 생활상

- 북한이 정치범을 특별수용하게 된 것은 1958년 연안파 숙청 사건(8월 종파사건) 연계자 및 그 가족을 교화소가 아닌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북한식 수용소군도인 정치범 수용시설을 북한당국은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들간에는 『특별독재 대상구역』, 『종파굴』,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등으로 불려지고 있음

※ 일반범죄 수용시설은 교화소 또는 노동교화소임.

< 수용소 현황 >

- 수용소는 함남·함북, 평남·평북, 자강도 등 5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 20만여명으로 추계
 - 함남 : 요덕·단천·덕성군
 - 함북 : 온성(2)·회령·화성·부령군
 - 평남 : 개천·북창군
 - 평북 : 천마군
 - 자강도 : 동신군

< 수용소 규모 >

- 각 수용소 규모는 각각 51-250㎢로서 수용소당 5,000명-50,000명 수용
- 수용소는 통상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 대상자들의 죄질에 따라 격리 수용
 - 『완전통제구역』은 반당·반혁명분자, 종파분자, 해외도주 / 도자 등을 수용하며 거의가 종신 수용
 - 『혁명화구역』은 불순 북송교포, 당정책 위반자, 자유주의 성향자 등을 수용하며 일정기간 (1-5년)경과시 심사결과에 따 출소 가능

< 경비 실태 >

- 각 수용소에 3-4m 높이로 2-3중의 외곽철책선과 탈주가 용이한 곳에는 고압 전기철조망·지뢰밭·함정 등을 설치
-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망루 초소가 있으며 감시망루에는 AK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감시원이 군견과 함께 외곽순찰 및 매복조를 운영하여 주야 경
- 수용소안에도 건물주위에 내부 철책선을 설치

< 수용자 대우 및 일과 >

- 수용소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친지면회 및 서신연락 금지 등 외부와 차단
- 선거권 · 피선거권 등 기본권이 박탈되고 배급 · 의료혜택 등이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
-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으며 인원점검시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는 경우 심한 구타를 당하고 3회이상 늦을 경우 월지급 식량에서 하루분 공제
- 작업은 5인조로 구성하여 저녁 9시까지 실시한 후 10시부터 1시간정도 金日成 덕담, 金父子 찬양노래, 주체사상 학습 등을 교육받고 점심은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식사
- 저녁 6시에 담당 보위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할당된 작업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작업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우는 연장 작업
- 작업과 학습시간을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모여 다니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수용자로 위장한 정보원을 잠입시켜 수용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체제 비판자나 탈출을 기도하려는 자들을 색출

< 식생활 >

- 『가족세대』는 성인 1인당 주식으로 강냉이 550g(사회일반노동자 700g)을 책정하고 부식물은 소금과 주 1회정도 도토리된장 한숟갈을 배급토록 되어 있으나 작업태만 등을 이유로 수시 식을 공제, 보름후에는 식량이 없어 산나물, 풀뿌리, 나무열매 등으로 연명
- 『독신중대』에 수용된 범죄 당사자의 경우는 1일 강냉이 360g, 소금만을 제공하며 작업태만시 또다시 90g을 공제, 허기로 인해 통상 1년 수용기간중 15Kg씩 체중 감소
- 수용자들은 배고픔으로 돼지나 소 구유통속과 심지어 쇠똥속에 있는 강냉이알, 콩 등을 찾아내어 씻어먹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영양보충을 위해 개구리알을 먹거나 뱀, 쥐 등을 닥치는대로 취식
- 봄철이 되어 새싹이 돌아나면 수용자들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뜯어 먹기 때문에 독버섯이나 독풀을 먹어 얼굴이 통통부어 고신하는 사례가 허다

< 주 거 >

- 가옥은 독신중대의 경우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나 가족 세대의 경우 수용자들이 흙벽돌과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로 만들어 거주하기 때문에 판자가 썩어 비가 새고,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미장한 관계로 먼지가 많이 나며, 피나무 껍질로 만든 다다미를 깔고 생활

- 전기는 동네 자체 발전소를 이용, 매 가정에 전구 한개만 달게하고 저녁 7시부터 12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차례만 공급하고 있으나 너무 어두워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
 - * 마을에 따라서는 전기조차 없어 솔광으로 밥 먹을 시간만 켜는 경우도 있음
- 모든 세대가 공동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수십명씩 줄을 서서 용변을 봐야하고 마른 강냉이잎, 콩잎, 호박잎, 칡잎 등을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
- 겨울철에는 마을주변에 나무가 없어 겨우 밥이나 하는 정도로 불을 때기 때문에 추위를 쫓느라 몸을 비비며 잠을 못자는 형편이고 하천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서 먹고 있음

< 의 복 >

- 『가족세대』의 경우는 수용기간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을 지급하며, 3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공급하나 『독신중대』는 수용당시 입고 갔던 의복 한벌로 생활

- 작업을 하기 위한 노동화는 1년 6개월에 1켤레, 겨울 숨동화는 5년에 한번 공급하고 양말, 팬티 등 속내의는 일체 미지급
- 모든 수용자들이 조각난 천으로 3단까지 기어서 입고 다니며 겨울철에는 얼굴, 팔, 다리 등을 천조각으로 감고 생활

< 각종 질병실태 >

- 수용자 대부분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폐염, 결핵, 간염, 폐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환자들은 격리 수용하지만 치료를 하지못해 저절로 사망
- 고환염, 치질에 걸린 중환자도 작업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엉덩ㅇ를 양손으로 벌려잡고 걷는자, 오리발 걸음을 하는자, 숨이차서 걷다 주저앉는 자 등 처참한 모습이며 걸음속도가 늦어 구타당하기 일쑤
- 수용소내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을 뿐아니라 약이 없어 요덕 수용소의 경우 매년 40-50명씩 병으로 사망

< 북송교포 수용실태 >

-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74년초 100여세대 600여명이 수용된

이후 매년 100-200세대씩 수용되어 혁명화 구역인 구읍·입석
지구 북송교포 마을에는 일가족 수용자 800여세대 5,000여명과
범죄당사자 300여명 등 5,300여명이 집단거주

-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수용소에 수용되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으며 보위부원들은 이들에게 「반쪽발이」라는 냉대를 하고 일반주민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
- 주간에도 상호방문을 규제, 수용소내 마을간 통행시 통행증이 있어야 하고 저녁 10시부터 통행을 금지
- 야간에는 보위부원과 작업현장 감독 3-4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가택점검을 실시하고 인원이 없을 경우 마을의 종을 쳐 비상을 걸어 수색 실시
- 야간 10시이후 이동하다 순찰에 적발되면 1개월간 중노동에 처하고 3회이상 적발시는 수용소내 「구류장」에 유치
- 북송교포들은 수용소 생활에 쉽게 적응치 못해 굶주림으로 폐렴, 간염 등 질병에 쉽게 걸려 북한주민에 비해 일찍 사망

< 공개 총살 >

- 도주기도자, 보위원 구타자 등 매년 15명 정도 공개총살

- 공개총살 대상자가 발생하면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통상 아침 10:00경 작업장에서 수용자들을 전원 집합시킨 후 보위부원 2명이 처형대상자를 나무말뚝에 눈과 가슴, 다리부분을 포박하여 눈부위는 헝겊으로 가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림
- 관리소장 등 간부 2-3명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소장이 “반역자 000에 대한 처형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대상자의 죄행에 대해 약 5분간 설명한뒤 “민족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다. 형법 00조에 의거 총살형에 처한다”고 선언
- 지휘자가 “민족반역자 000를 향하여 쏴”하면 보위부원 3명이 자동보총으로 첫번 3발은 눈부위를, 두번째 3발은 가슴부위를, 마지막 3발은 다리부분을 사격
- 시체는 가마니에 말아서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실어 인근 야산에 매장

< 수용소 출소자 감시실태 >

- 수용소 출소시에는 수용소내의 생활실상을 일체 누설치 못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재수감 조치한다는 사실을 경고

- 수용소 출소자는 탄광 또는 집단농장으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며 북송교포 또는 놈물을 제공한 일부 사람은 공업지역에 배치되기도 하나 입당은 물론 직업, 여행까지 제한되고 국가보위부에서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목
-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농장, 기업소내 창고, 휴게실 등을 거소로 이용하고 미혼자의 경우 결혼이 어려워 수용소 출신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출소시 공민증에 「000 경비대 농장원」이라는 별도의 기록이 표기되어 일반 사회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정치범수용소 출신이 일반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10년이 가중됨

3. 주요 수용인물

성명	전직	숙청 사유
김창봉	부수상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
박금철	"	당 정책에 불만
김도만	당비서	"
김광협	당비서	반당, 종파분자
방철갑	해군 사령관(상장)	
김병하	국가보위부장	김정일 후계반대
허봉학	대남사업총국장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
이성실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권성철	외교부 참사실장	
유장식	당 비서국 비서	김정일 후계 반대
허익	당 중앙당학교 교장	
이기석	도시경영상(1차 내각)	
윤순달	당 연락부 부부장	
이동호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 중장	
김경련	당 재정경리부장, 부총리	김정일 후계 반대
김양춘	제7집단군 사령관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
정병갑	제3집단군 사령관	"
김동규	부주석	김정일 후계 반대

※ 상기 인물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고서 및 귀순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4. 정치범수용소와 주민구금 장소

- 69호 노동교화소(노동갱생원)
 - 모든 시·군에 설치되어 1개 교화소당 100 - 2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경범죄 위반자, 통행증 미소지자, 노력동원에 나태한 자들로서 대개 3개월 - 1년간 강제노동을 실시
 - 이들은 사회안전부에서 선정하고 아무런 공식기소나 재판절차 없이 수용하고 있음
- 노동교화소
 - 도 단위로 2 - 3개소씩 설치되어 주로 강간, 강·절도, 집단 생활 이탈자, 무단월경자, 정치사상범 자녀 등을 수용하여 대개 1 - 2년의 교화노동후 출소함
- 교화소
 - 도 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 된 자본주의적 지식인, 정치적 반대자 등 “사상이 불온한 자”를 수용
 - 교화소안에서는 일체의 면회나 사식 차입이 금지되며 만기출옥 후에도 계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받음

- 149호 대상지역

- 1958년 사회주의 개혁에 따라 전주민을 통제와 감시체제로 조직화하면서 『중앙당 집중지도』를 통해 소위 반혁명·적대분자를 색출, 약 7만여명을 『내각결정 149호』에 따라 산간벽지로 추방한 것으로 부터 시작
 - 그 위치는 평양과 개성으로 부터 50Km, 휴전선과 해안선에서 20Km이상 떨어진 오지에서만 살도록 엄격히 통제
 - 수용자들은 주로 탄광이나 광산, 채벌장 등에서 중노동에 혹사 당하고 있음
- * 이 지역은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철조망이나 경비초소가 없고 당국의 허락하에 타지역 왕래 가능

- 정치범 교화소

- 수용기간에 따라 중앙(평양)에 3개소(15-20년 복역자), 지방에 8개소(10-15년 복역자)를 설치·운용
- 수용대상자는 김일성 부자 간접비난, 남한방송 청취, 간첩 간접 지원 등 『7호사건』 해당자를 재판없이 수용

- 49호 보양소

- 2개군에 1개씩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동 장소는 정신질환자 치료명분으로 종교인, 지식인 등을 집단 수용